

1. 개정이유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신청을 선주 뿐만 아니라 조선소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해외에서 발주 받은 선박은 조선소가 직접 환경친화적 선박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식별된 개선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5조제2호 개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운항탄소 집약도지수를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및 인증 기준으로 추가함

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자에 조선소 추가(안 제6조 개정)

조선소가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친화적 선박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조선소가 외국 선주로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을 발주받아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직접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신설함

라.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제도 개선(안 제9조 개정)

- 1) 환경친화적 선박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는 예비인증 시 제출한 설계도면 등 서류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건* 충족 시 예비인증을 받은 것과 다르게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예비인증 신청 대상자를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로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는 모두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증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예비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 신청을
하거나 자기적합성선언 신고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위 협의 결과 규제 없음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같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같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제6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으로,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 건조 또는 개조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와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을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대한민국 선박소유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保維)하고 있거나 구매, 건조 또는 개조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 하는 자

3.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을 “다음”으로, “서류”를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각 호 각 목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및 기자재의 최종설계도면 등 해당 설비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

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최종설계 도면

나.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기적합성선언) ① 외국의 기업 등으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발주 받아 건조하는 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자는 그 선박에 적용된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이하 “자기적합성선언 신고”라 한다)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 신고를 한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기적합성선언을 하려는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심사·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

2. 자기적합성선언을 하려는 선박에 적용된 환경친화적 기술 또는 설치된 기자재 관련 사양서 또는 최종설계도면 등

3. 그 밖에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 신고 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검토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자기적합성선언 신고 확인 현황을 반기 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을 인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2.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인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

제9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를 “구매, 건조 또는 개조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매, 건조 또는 개조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계획서

제9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등급과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기자재의 재인증을 신청하는 자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 신고를 하는 자
4. 제9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한도는 최대 2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실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증의”를 “설비 또는 운항요건 등 인증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 및기자재 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기자재 인증서는 개정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로 본다.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선박의 명칭			선박의 종류/용도		
	선박번호			IMO 번호(해당 시)		
	선적항/국적			총톤수	톤	
	길이	m	너비	m	깊이	m
	보유형태	[] 신조, [] 수입, [] 개조, [] 기타				
	적용기술	[] 대기오염물질 저감		[] 선박에너지효율 향상		[] 환경친화적 동력원
계약일	년 월 일		인도일	년 월 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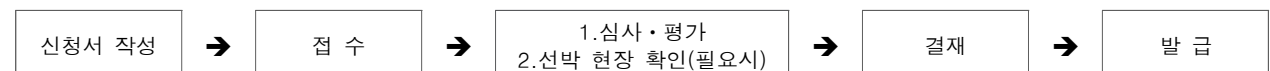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및 기자재의 최종설계도면 등 해당 설비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환경친화적 선박의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1부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공고한 서류 각 1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작성방법

- 선박의 명칭, 선박의 종류, 선박번호, 선적항, 국적, 총톤수, 길이, 너비, 깊이는 선박원부(船舶原簿)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적고, 선박의 용도는 선박검사증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적용기술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선박에너지효율 향상 설비, 환경친화적 동력원 가운데 1개 이상을 선택하며, 각 분야에 대해 질 소산화물 저감설비, 황산화물 저감설비, 입자상물질 저감설비,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종류 등과 같이 적용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계약일과 인도일은 보유형태에 따른 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기자재의 명칭		
	형식	제조번호	
	규격	시험기관	
	신청사유	[] 제조, [] 수입	
	해외 제조사 (수입하는 경우)	법인명 또는 성명(국영문)	
	주소(국영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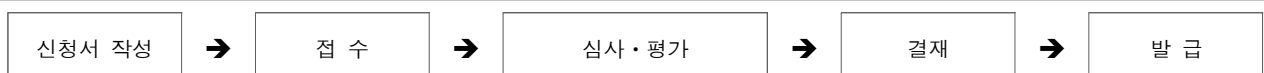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최종설계 도면 2.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작성방법

1. 해외 제조자는 수입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기자재 명칭은 발전용 내연기관, 보일러, 폐열회수장치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기적합성선언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선박의 명칭	선박의 종류/용도		
	선박번호	IMO 번호(해당 시)		
	선적항/국적	총톤수		
	길이	m	너비	m
	깊이	깊이		m
	등록일	년 월 일		
적용된 환경친화적 기술 또는 기자재	[] 대기오염물질 저감	[] 선박에너지효율 향상	[] 환경친화적 동력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자기적합성선언을 하였음을 신고하며, 자기적합성선언 내용에 맞지 않은 선박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자기적합성선언을 하려는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심사·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 2. 자기적합성선언을 하려는 선박에 적용된 환경친화적 기술 또는 설치된 기자재 관련 사양서 또는 최종설계도면 등 1부 3. 그 밖에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작성방법

- 선박의 명칭, 선박의 종류, 선박번호, 선적항, 국적, 총톤수, 길이, 너비, 깊이 및 등록일은 선박국적증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적고, 선박의 용도는 선박검사증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적용기술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선박에너지효율 향상 설비, 환경친화적 동력원 가운데 1개 이상을 선택하며, 각 분야에 대해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황산화물 저감설비, 입자상물질 저감설비,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종류 등과 같이 적용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1.심사·평가
2.선박 현장 확인(필요시)



결재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증서번호 제 호				
Certified No.				
자기적합성선언 신고 확인증 VERIFICATION CERTIFICATE FOR DECLARATION OF CONFORMITY OF ENVIRONMENT-FRIENDLY SHIP				
조선소 Builder of Ship	성명(법인명) Name			
	주소 Address			
선언사항 Object of Declaration	선박의 명칭 Name of Ship		선박의 용도 Typ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 선번호 Official No. or Hull No.		IMO 번호 IMO No.	
	적용된 환경친화적 기술 또는 기자재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or Equipment			
	특기사항 Remarks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 신고 확인증을 교부합니다. This verification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6 of Environment-friendly Ship Act and Article 6-2.4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Environment-Friendly Ship Act.				
년 월 일 Y M D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직인				

인증번호 제 호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선박소유자 또는 신청자	성명(법인명)			
	주소			
인증사항	선박의 명칭		선박의 용도	
	선박번호		IMO 번호	
	설비구분			
	적용기술			
	규격 및 수량			
	인증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까지		
	특기사항			
인증조건	1. 인증받은 선박은 인증을 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인증번호 제 호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		
제 조 자 또는 수 입 자	성명(법인명)	
	주 소	
인 증 사 항	기자재의 명칭	
	형식	
	제 조 번 호	
	제 조 국 가	
	규격 및 수량	
	인증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까지
	특기사항	
인 증 조 건	1. 인증받은 기자재는 인증을 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선박의 명칭			선박의 종류/용도		
	선박번호 또는 호선번호			IMO 번호(해당 시)		
	선적항/국적 (해당 시)			총톤수	톤	
	길이	m	너비	m	깊이	m
	보유(또는 발주를 받은) 방식	[] 신조, [] 수입, [] 개조, [] 기타				
	적용기술	[] 대기오염물질 저감		[] 선박에너지효율 향상		[] 환경친화적 동력원
계약일	년 월 일		인도일	년 월 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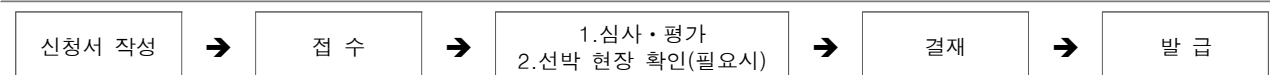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구매, 건조 또는 개조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계획서 1부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계획서 1부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공고한 서류 각 1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작성방법

- 선박의 명칭, 선박의 종류, 총톤수, 길이, 너비, 깊이는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 적용기술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선박에너지효율 향상 설비, 환경친화적 동력원 가운데 1개 이상을 선택하며, 각 분야에 대해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황산화물 저감설비, 입자상물질 저감설비,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종류 등과 같이 적용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계약일과 인도일은 보유(또는 발주를 받은) 방식에 따른 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증번호 제 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선박소유자 또는 신청자	성명(법인명)			
	주소			
인증사항	선박의 명칭		선박의 용도	
	선박번호 또는 호 선번호		IMO 번호	
	설비구분			
	적용기술			
	규격 및 수량			
	인증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까지
	특기사항			
인증조건	1.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비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등급과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예비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 -----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 허용값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 허용값, 같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온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 ----- -----

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생 략)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
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 허용값

3. ~ 6. (생 략)

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
고 있거나 구매, 건조 또는 개조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와 환경친화적 기
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
는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기자재의 인증을 신

-----.

1. (현행과 같음)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
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 허용값, 같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
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
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3.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 다음 -

----- 자
는 -----

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대한민국 선박소유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保維)하고 있거나 구매, 건조 또는 개조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 하는 자

3.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 -----

----- 다음 -----
-----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각 호 각 목에 따른 서류-----

한다)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및 기자재의 최종설계도면 등 해당 설비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및 기자재의 최종설계도면 등 해당 설비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

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최

3.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④ (생략)

<신설>

종설계 도면

나.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삭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자기적합성선언) ① 외국의 기업 등으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발주 받아 건조하는 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

언을 한 자는 그 선박에 적용된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
자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이하 “자기적합성
선언 신고”라 한다)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
언 신고를 한 자는 별지 제1호
의3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 신
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자기적합성선언을 하려는 선
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기준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
음을 심사·평가하기 위해 작
성한 서류

2. 자기적합성선언을 하려는 선
박에 적용된 환경친화적 기술
또는 설치된 기자재 관련 사
양서 또는 최종설계도면 등

3. 그 밖에 자기적합성선언 확
인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자기적합성선언 신고 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검토 과정에서 현장확인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자기적합성선언 신고 확인 현황을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1. 환경친화적 선박을 인증하는

<신 설>

② ~ ④ (생 략)

제9조(예비인증) 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해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 건조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 전환하려는 계획서

2. 3. (생 략)

③ ~ ⑥ (생 략)

⑦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2.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인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예비인증) ① 구매, 건조 또는 개조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

---.

② -----

-----.

1. 구매, 건조 또는 개조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계획서

2.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⑧ (생략)

<신설>

-----.

다만, 예비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등급과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기자재의 재인증을 신청하는 자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 신고를 하는 자

4. 제9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

	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한도는 최대 2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인 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실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 의 장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 취소 대상 및 그 사유 등을 통 보해야 한다.	제11조(인증의 취소) ①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인증의</u> 근거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변경되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 우	2. <u>설비 또는 운항요건 등 인증 의</u> -----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